

제425회 임시회

'25. 4. 22.(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8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가.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감염병 확산 경험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감염병 환자 및 병력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, 배제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.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와 병력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음.

나. 본 조례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, 인권 중심의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감염병 환자 등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공보건 체계를 실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 및 제4조).

나.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6조).

다.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7조).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음창규)

가. 제안 배경 및 필요성

-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은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,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, 배제를 초래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.
- 감염병 확산기에 일부 감염병환자, 병력자, 또는 단순 접촉자에게까지도 사회적 편견이 가중되었고, 이는 당사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며 정신적 피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짐.
-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 중심의 감염병 대응 정책 마련과 더불어, 감염병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.
- 본 조례안은 향후 발생가능한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, 공공보건정책의 방향성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환자, 의사환자, 병원체보유자, 감염병의심자를 포괄하여 “감염병환자 등”으로 정의함.
-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, 감염병환자 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 수립과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하였음.

- 안 제4조는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여,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인권 존중의 태도를 요구함.
-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으로, 관련 업무 수행자 대상의 교육 및 홍보를 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적용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함.
- 안 제7조는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으로, 심리·법률 상담, 인식 개선 홍보,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며, 사업의 위탁 근거도 마련함.
-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, 시·군, 의료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기반을 명시함.
-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, 관련 공무원 및 유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.

다. 종합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보장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이력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와 복귀 지원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정책적·사회적 의의가 큼.
- 다만, 선언적·권고적 성격이 강한 조례로서,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후속 세부계획 마련, 예산 편성, 민간 협력 확대 등의 실천적 기반이 필요함.
- 조례 제정으로 인권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고, 도민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, 본 조례안은 타당하며 제정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.